

의안번호	2207324
의 퇴 인	이종배의원
회 답 일	2025.1.16
추 계 번호	25B0102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2 신설 (입주기업의 기업도시 지역인재 채용 등)	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(이하 “기업도시 입주기업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 또는 고등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(이하 “기업도시 지역인재”라 한다)을 입주기업의 채용규모, 해당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4조의2 신설 (입주기업의 기업도시 지역인재 채용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그런데 기업도시 입주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및 그 지역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다만, 현재 개발 중인 기업도시는 총 4개 지역(충주, 원주, 태안, 영암·해남)으로 나타남
 - 개발구역 지정 완료 기업도시 (아래 표 참고)
 - 개발 진행 중: 태안, 영암·해남
 - 준공 완료: 충주('12년 준공), 원주('19년 준공)
 - 개발구역 미지정 기업도시(기업혁신파크*): 거제, 당진, 춘천, 포항
 - * 지자체·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'24년 선정

[표 1] 개발중인 4개 기업도시의 유형별 분류

유 형	주 된 기 능	소관부처	해당 기업도시
산업교역형	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	국토교통부	없음
지식기반형	연구·개발 등 Science-Park형		충주, 원주
관광레저형	관광·레저·문화 위주의 도시	문화체육관광부	태안, 영암·해남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(2025.1)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